

대형마트 동물판매 매장 관리 지침 Guideline (안)

동물자유연대 | 사) 한국동물복지협회

- 본 문서는 동물의 복지 상태를 고려하여, 대형마트 동물 판매 매장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동물을 직접 돌보는 법과 동물의 건강관리에서부터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먹이와 물품, 사육시설의 환경 관리, 생리학적 습성을 반영한 보조 설비, 사육밀도, 기록유지, 구매자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호주 동물보호법 내 판매업 관련 규정, 영국과 미국 지자체의 동물판매업 허가 기준 등을 참조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대규모 주택단지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형할인마트는 최근 들어 일반인들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와 같은 소동물을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뻗어있는 유통망을 고려해볼 때 판매되고 있는 동물의 수도 막대하며, 판매하고 있는 동물의 종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엄연히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관리 기준 없이, 상품 구성을 늘리는 차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물의 수와 종을 늘리고 있는 오늘날 대형 마트의 동물판매는 보다 엄격한 제한이 가해져야 합니다. 판매용이든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든 대형마트는 살아있는 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매장 운영에 있어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여건일 경우 매장 내의 살아있는 동물 판매는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각 대형마트 지점 동물 판매 매장 관리자와 판매원 여러분은 본 가이드라인을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동물 관리 및 매장 환경 개선의 지침으로, 그리고 대형 마트의 동물 판매가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 여러분은 대형 마트 측에 항의를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준수 사항

판매 기준

-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동반했을 경우 또는 서면동의서 확인 후 동물을 판매할 수 있다.
- 동물을 구입하는 모든 구매자들에게는 동물을 돌보는 방법이 안내된 문서나 책자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병들거나 부상당한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 마트 내에서 판매된 동물은 반드시 동물이 탈출하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용기에 넣어진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동물 사육 시설

- 동물 판매 매장은 혼잡하거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 동물을 사육하는 우리 안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이 없어야 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편안함을 주기 위하여 독성이 없는 바닥재를 깔아주어야 한다.
- 동물을 사육하는 우리는 동물과 우리의 바닥 상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사육 우리는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불편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면적과 일어섰을 때 머리가 사육 우리의 천장에 닿지 않는 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 우리 안에는 동물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조용하고 어두운 휴식공간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 질병이 있거나 기타 격리가 필요한 동물을 따로 둘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 동물을 사육하는 우리 내부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 포유류의 경우 15-30℃ 범위 내에서 적절히 유지시켜준다.
 - 파충류의 경우 적정 습도와 온도유지가 동물의 건강 상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별 특성에 맞는 온도와 습도 관리에 특별히 주의하며, 필요할 경우 전구나, 적외선 램프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한다.

예) 레오파드 게코 : 30-40도 온도 유지

그린 이구아나 : 따뜻한 곳은 30-35도, 시원한 곳은 25도 내외 유지,
습도는 50-70%, 적외선 램프 설치

* 파충류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인 동물 종 별로 적합한 온도, 습도,
기타 생활조건에 대해 추가 조사함.



-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의 경우 최대한 자연 주기에 맞게 낮과 밤의 길이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조명을 끄거나 다른 보호 장비를 통해 차단시켜주도록 한다.
- 동물을 직접 만지려고 하거나 우리 벽을 두드리지 말라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한다.

동물의 유입 기준

- 구입처로부터 새로 들어온 동물들은 최소 48시간 동안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동물과 섞어두어서는 안된다.
- 각 동물의 종별로 모두 어미젖을 완전히 뎀 상태로, 아래 분류된 연령을 넘어서 동물들만을 판매하도록 한다.
 - 토끼 : 생후 6주령 이상
 - 기니피그 : 생후 4주령 이상
 - 설치류 : 생후 4주령 이상
- 햄스터의 경우 새로 들어온 동물이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다른 동물들과 합사되지 않도록 한다.

먹이와 물 공급

- 동물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적합한 먹이를 공급하며, 항상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함께 마련해준다.
- 동물이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활동 상태에 접어들거나, 수의학적 치료 등의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동물에게 1일 1회 이상 먹이를 공급해야 한다.
- 물과 먹이는 매일 깨끗한 상태의 것으로 갈아주도록 한다.
- 여러 마리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우리의 경우 먹이 공급 후, 각 동물들이 먹는 상태를 관찰하여 먹이를 먹지 못하는 동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 사료통과 물그릇은 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되지 않는 위치에 자리해야 하며,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육 환경 및 위생 관리

- 배설물이나 오래된 깔짚과 먹이, 죽은 동물 등은 발견되는 즉시 위생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 새로운 동물을 넣기 전 빈 우리는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한다.

질병 관리 및 수의학적 지원

- 매장 관리 직원은 동물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하여 하루 1회 이상 다음의 상태를 점검한다. (야행성동물은 제외)
 - 먹이와 물을 잘 먹는가
 - 배변상태
 - 움직임의 상태
 - :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없어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진 경우
 - 질병의 징후
 - : 무기력함, 식욕부진, 체중감소, 설사, 눈이나 항문의 분비물, 안구상태, 호흡곤란, 호흡률 급증, 기침, 탈진, 피부병, 급작스런 털빠짐, 기생충감염 등
- 병들거나 부상당한 동물을 즉시 매장 판매대로부터 격리시킨다.
-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거나 의미없는 반복행동 등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는 동물들은 방문객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격리시킨 후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 행동이 눈에 띄게 둔화되거나 스스로 먹이를 먹지 못하는 동물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이나 전문가에게 이송한다.
- 기생충예방, 백신접종 등은 판매 전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장 내에 비치해둔다.

매장 내 판매가 불가능한 동물

- 국내 야생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호동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거한 보호동물
- 검역을 통과 사실 증빙이 없는 외래종의 동물

기록 유지 및 관리

- 다음의 사항들은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두도록 한다.
 - 동물의 공급처(상호/사업자명, 전화번호 기록)
 - 종
 - 태어난 날
 - 공급처로부터 구입한 날짜
 - 수의학 기록 : 접종, 구충 여부 및 종류, 기타 병력
 - 동물 사육 시설의 점검일, 청소 일자

* 가능한 한 전시 우리에 기록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고함

2. 권고 사항

판매 기준

- 개체 간 싸움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급속한 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햄스터는 판매처에 서부터 1마리씩 개별 사육하는 것을 권고한다.

사육 밀도

- 동물들의 불편함과 스트레스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사육 밀도 유지를 위하여 우리 한 칸에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는 다음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우리 한 칸 : 가로 50cm×세로 40cm 기준)

동물의 종	우리 1칸 당 적정 사육 마릿 수 (이하)	1마리 추가 유입시 추가 면적 (cm ²)
토끼	2	300 이상
햄스터	20	마리당 최소 90cm ²
랫트	12	200 이상
기니피그	3	600 이상

수의학적 처치

- 각 지역별 매장과 연계하여 판매 중인 동물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이나 수의사와의 연락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